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40호 2016. 2. 29(월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6-4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440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6 - 46호

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

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.

2016년 2월 26일

사 천 시 장

1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

저수지명	위 치	제 원				비 고
		총저수량 (천m ³)	길이 (m)	높이 (m)	수혜면적 (ha)	
어정곡	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420-2 일원	77	115	15	15	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금곡	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873-2 일원	10.8	77.5	12	7.7	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이곡	사천시 이홀동 384-2 일원	16.1	124	8	10.9	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
2.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: 경상남도 사천시(건설과)

3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

사 천 시 공 보

제440호(3)

- 정밀안전진단 결과, 제체 및 여수토방수로, 복통 등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 안전도 저하, 홍수대응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정비·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

4.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-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
 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 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
 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
※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.

5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: 2016. 2. 26.

6. 문의처 : 사천시청 건설과(055-831-3278)